

2005. 10. 21. 10 : 00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심 사 보 고 서

- |                                     |       |
|-------------------------------------|-------|
| 1.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조례안                | ----1 |
| 2. 거창군 야생동물등에 의한 피해<br>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

산업건설위원회

# [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5. 10. 12.
- 나. 제 출 자 : 신 주 범의원의외 6인
- 다. 회부일자 : 2005. 10. 14.
- 라. 상정일자 : 2005. 10. 19(제1차회의)
- 마. 의안번호 : 제2005 - 56호

##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제정이유

- 우리 농촌은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가속화로 이농현상과 고령화가 계속되고,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 대농가 중심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농가는 농업여건의 불량과 노동력의 감소로 생산력이 저하되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생활환경이 점차 낙후되는 실정으로,
-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은 도시계획 지역 외 농촌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소유 농지 5,000m<sup>2</sup>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안 제3조)
- 사업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영농편의사업, 농기계 구입, 소득증대 사업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으로 함(안 제4조)
- 지원 기준은 단위 사업이 50만원 이상 500만원의 이하로, 지원액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며, 농가당 1회 200만원 이하, 1년에 최고 30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5조).
- 선정기준은 농지소유 면적 3,000m<sup>2</sup> 이하를 1순위로 하고 차순위로 주거환경 개선, 소득증대 사업 등의 순서로 함(안 제 6조)
- 매년 3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시행토록 함(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농업 정책에서 소외받는 저소득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로서 농지소유 규모에서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농가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 시행과정에서 지원대상과 사업대상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체계적으로 나열하여 시행에 따른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검토되었으며,
- 기타 조례의 내용과 형식 및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5,000m<sup>2</sup>이하의 소농가에 대하여 생활 환경 개선사업, 영농편의 사업 등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 지원대상을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농촌지역에만 한정함으로써 도시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나 지원대상을 농업인 중 저소득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최고 30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의욕고취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음.

8. 소수의원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 거창군 야생동물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심 사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5. 10. 12.
- 나. 제출자 : 이 현영의원외 7인
- 다. 회부일자 : 2005. 10. 14.
- 라. 상정일자 : 2005. 10. 19(제1차회의)
- 마. 의안번호 : 제2005 - 57호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정부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하여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뿐 아니라 먹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일변도의 정책으로 야생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농민의 농업 생산 활동 시 인명피해 발생이 증가 되어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사항의 보완과 결실기의 농작물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업인이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작물 피해보상도 할 수 있게 전부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조례안을 총칙과 농작물 피해보상 및 인명 피해보상으로 구분하여 4장 17개조로 하였으며,
- 용어의 정의에서 야생동물에 조수류를 추가하였고, 농작물, 농작물 피해, 피해 농업인 등을 추가로 규정 하였음 (안 제2조).
- 농작물 피해보상의 보상요건으로 피해면적 100평(실경작 면적기준), 또는 피해금액 30만 원 이상으로 본인이 신고한 경우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
- 보상금지급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정하였음 (안 제5조).
-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출하가격의 70%를 기준으로 함(안 제6조).
- 법령상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 경작 및 농외소득이 60% 이상일 경우 보상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안 제8조).
- 인명피해에 대한신고는 14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관계공무원이 조사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위원수를 9명 이내로 조정하고, 군의원, 농업인 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 (안 제1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우리군은 멧돼지, 고라니, 독사류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인명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2004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하여만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까지 보상을 확대하는 개정조례로서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 대상 야생동물을 조수류까지 포함하고 피해보상 요건을 330m<sup>2</sup>, 또는 피해액 3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피해 보상 기준을 농촌지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출하가격의 70%로 산정토록 하고 신고기간을 농작물은 7일 인명피해는 14일로 정한 것 등은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객관적 입장과 충분한 시간을 고려한 사항으로 검토 되었으며,
- 조례의 내용과 형식 및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농업인이 농업생산활동중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인명 피해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농작물의 피해 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 조수류에 대한 피해조사와 예산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포도나 사과 등은 조수류에 의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제외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음.

8. 소수의원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